

부산지방법원 2021. 3. 18 선고 2020가단8803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고C

변론 종결 2021. 3. 4.

판결 선고 2021. 3. 18.

주 문

1.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. 11. 18.에 체결한 증여계약을 13,080,70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13,080,707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요규회

별지